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2. 개정내용 : 면책조항 문구 수정 및 일방적인 계약의 정지·해지 관련 조항 변경, 용어 변경, 문구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 조 (목적)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u>약관</u>(이하 '약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유학(예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이주 유학클럽(Hana Overseas Club)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제공자인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과 이용자인 <u>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u></p>	<p>제 1 조 (목적)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u>이용약관</u>(이하 '약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유학(예정) <u>손님</u>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이주 유학클럽(Hana Overseas Club)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제공자인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과 이용자인 <u>손님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u></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p>제 2 조 (서비스의 이용대상) <u>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u></p>	<p>제 2 조 (서비스의 이용대상) <u>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u></p>	<p>문구 변경</p>
<p>제 3 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 FAX 또는 E-mail 로 <u>고객의</u>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u>지급 지시</u>를 받아서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u>지급처리</u>. 단, 타인 앞 해외송금 및 계좌이체는 <u>제한</u> 2. 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토록 <u>제공</u> 	<p>제 3 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 FAX 또는 E-mail 로 <u>손님의</u>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u>지급신청</u>을 받아서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u>지급처리</u>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타인 앞 해외송금 및 계좌이체는 <u>제한</u>됩니다. 2. 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토록 <u>제공</u>하는 서비스입니다. 	<p>문구 변경</p>
<p>제 4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u>서비스 시간은 고객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 영업시간으로 한다.</u> ② FAX 및 E-mail 등에 의한 수시지급이 <u>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접수되는 경우 당일 중 처리</u>하고, <u>은행의 영업시간 이외에 접수되는 경우는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의 영업일 중에 처리</u>하기로 한다. ③ 서비스 신청 당일 수시지급청구서 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FAX 또는 E-mail 을 통한 수시지급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u>한다.</u></p>	<p>제 4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u>이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손님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 영업시간(09:00~16:00)으로 합니다.</u> ② <u>은행은 FAX 및 E-mail 에 의한 수시지급신청이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일 중 처리</u>하고, <u>은행의 영업시간 이외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접수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의 영업일 중에 처리</u>하기로 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 당일 수시지급청구서 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FAX 또는 E-mail 을 통한 수시지급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u>처리</u>됩니다.</p>	<p>문구 변경 용어 변경</p>
<p>제 5 조 (기본계좌) <u>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요구불예금을 기본계좌로 가입하여야 한다.</u></p>	<p>제 5 조 (기본계좌) <u>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손님은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을 기본계좌로 설정하여야 합니다.</u></p>	<p>문구 변경 용어변경</p>
<p>제 6 조 (약정방법) ① <u>고객이 은행에 내점하여 서비스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에 자필 서명하여 약정을 체결</u>한다. ② <u>고객이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내점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이 확인된 문서를 송부하여 은행에서 수령을 확인한 때 그 약정은 체결</u>된 것으로 본다.</p>	<p>제 6 조 (약정방법) ① <u>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손님은 은행에 내점하여 이 서비스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에 자필 서명하여 약정을 체결</u>하여야 합니다. ② <u>손님이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내점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이 확인된 문서를 송부하여 은행이 수령을 확인한 때 그 약정은 체결</u>된 것으로 봅니다..</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p>제 7 조 (거래 내용의 전자 녹취)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 녹취를 시행한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p> <p>제 8 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처리방법) ① <u>수시지급거래는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FAX 또는 E-mail 에 의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고객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한다.</u> ② <u>전항에 의한 수시지급거래는 FAX 로 송부 받은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하고, E-mail 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E-mail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처리하기로 한다.</u> ③ <u>타행환의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일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의 기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익영업일에 재처리 한다.</u></p>	<p>제 7 조 (거래 내용의 전자 녹취)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 녹취를 시행한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제 8 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처리방법) ① <u>수시지급거래는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FAX 또는 E-mail 에 의한 손님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합니다.</u> ② <u>전항에 의한 수시지급거래는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처리하며 i)FAX 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하는 경우, ii)E-mail 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E-mail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u> ③ <u>은행은 타행환의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일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손님의 기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익영업일에 재처리 합니다.</u></p>	<p>문구 변경</p> <p>용어변경 문구 변경</p>
<p>제 9 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업무 범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 9 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업무 범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문구 변경</p>
<p>제 10 조 서비스 신청 내용의 정정 및 취소 서비스 신청 후 신청내용의 정정 및 취소는 은행의 지급 거래 실행 전에만 가능하며, <u>고객</u>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u>아니한다.</u></p>	<p>제 10 조 서비스 신청 내용의 정정 및 취소 서비스 신청 후 신청내용의 정정 및 취소는 은행의 지급 거래 실행 전에만 가능하며, <u>손님</u>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u>않습니다.</u></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p>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조 제 1 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 기본계좌의 잔액이 서비스 신청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미결제 타점권이 있을 때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입•출금계좌의 잔액증명이 발급되었을 때 3. 입•출금계좌가 해약되었을 때 4.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때 5. 수시지급청구서 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상이하거나 E-mail 주소가 상이한 경우,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② 제 1항 제1호 및 제 2 호에 의한 서비스 제한은 해당 영업일간에 한한다.</p>	<p>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조 제 1 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본계좌의 잔액이 서비스 신청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미결제 타점권이 있을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입•출금계좌의 잔액증명이 발급되었을 경우 3. 입•출금계좌가 해지되었을 경우 4.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5. 수시지급청구서 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상이하거나 E-mail 주소가 상이한 경우,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② 제 1항 제1호 및 제 2 호에 의한 서비스 제한은 해당 영업일간에 한합니다.</p>	<p>용어 변경</p>
<p>제 12 조 (계좌이체의 제한) ① 본인명의 계좌이체(자행)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u>고객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u> ② 본인명의 계좌이체(타행)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 12 조 (계좌이체의 제한) ① 본인명의 계좌이체(당행간)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u>손님이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u> ② 본인명의 계좌이체(당행-타행간)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p>제 13 조 (이용수수료 등) ① 이용수수료, 타행환수수료 등 <u>제반 수수료</u>는 기본계좌에서 자동 인출한다. ② 이용수수료의 요율 및 계산 방법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은행은 거래</p>	<p>제 13 조 (이용수수료 등) ① 이용수수료, 타행환수수료 등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수수료는 기본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② 이용수수료의 요율 및 계산 방법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은행은 거래</p>	<p>문구변경</p>

<p>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 14 조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 송부)</p> <p>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u>고객이 요청한 해외 주소 또는 신고된 E-mail 주소로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한다.</u></p> <p>1. <u>고객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u></p> <p>2. <u>고객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u></p> <p>② <u>우편발송 시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을 기본계좌에서 자동인출 할 수 있다.</u></p> <p>③ <u>은행이 제 1항에 의해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제 15 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p> <p>① <u>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 등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제 6조를 따른다.</u></p> <p>② <u>고객이 신고된 E-mail 주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E-mail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u></p> <p>1. <u>고객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였을 때</u></p> <p>2. <u>고객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수시지급청구서를 보낸 E-mail 주소와 이용약정서에 기재된 E-mail 주소가 일치하였을 때</u></p> <p>③ <u>주소변경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 후 변경할 수 있다.</u></p> <p>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p> <p>① <u>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u></p> <p>1.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p> <p>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u>은행은 제 1항 각호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u></p> <p>제 17 조 계약의 해지</p> <p>① <u>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제 6조를 따른다.</u></p> <p>② <u>제 16조 1항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u></p> <p>③ <u>고객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유선, 신고된 FAX 및 E-mail 등으로 “서비스</u></p>	<p>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p> <p>제 14 조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 송부)</p> <p>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u>손님이 요청한 해외 주소 또는 신고된 E-mail 주소로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u></p> <p>1. <u>손님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u></p> <p>2. <u>손님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u></p> <p>② <u>은행은 우편발송 시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을 기본계좌에서 자동인출 할 수 있습니다.</u></p> <p>③ <u>은행이 손님의 요청으로 제 1항에 의해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한 경우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u></p> <p>제 15 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p> <p>① <u>손님은 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 등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제 6조에 따릅니다.</u></p> <p>② <u>손님이 은행에 신고된 E-mail 주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E-mail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u></p> <p>1. <u>손님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였을 때</u></p> <p>2. <u>손님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수시지급청구서를 보낸 E-mail 주소와 이용약정서에 기재된 E-mail 주소가 일치하였을 때</u></p> <p>③ <u>주소변경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u></p> <p>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p> <p>① <u>손님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u></p> <p>1.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p> <p>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u>은행은 제 1항 각호의 서비스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u></p> <p>제 17 조 (계약의 해지)</p> <p>① <u>손님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제 6조에 따릅니다.</u></p> <p>② <u>제 16조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은행은 손님에게 이를 사전통지하고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u></p> <p>③ <u>손님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손님에게 유선, 신고된 FAX 및 E-mail 등으로 “서비스 해지여부를 통지하고, 손님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u></p>	<p>문구 변경</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p>일방적인 계약의 정지·해지 관련 조항 변경</p> <p>용어 변경</p> <p>일방적인 계약의 정지·해지 관련 조항 변경</p> <p>용어변경 문구변경</p>
--	--	--

<p>해지여부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u>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u></p> <p>제 18 조 면책</p> <p>① <u>고객이 은행에 내점 하지 아니하고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약정서에 대해 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여기고, 약정서의 위, 변조 등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② <u>고객이 FAX 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 없다고 여기고,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위조 또는 변조 등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③ <u>고객이 E-mail 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의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가 일치하고,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④ <u>본인의 보유계좌에서 해외 송금하는 경우 수취계좌는 현지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 에 한하며, 고객이 요청한 수시지급청구서에 따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⑤ <u>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의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제 19 조 (생략)</p> <p>제 20 조 (관할법원) <u>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 21 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 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p> <p><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계좌이체 제한)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1일 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타인명의 계좌이체 서비스는 2013년 02월 21일부터 금 오백만원 이내로 제한되며(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FAX 로 한정),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p>	<p>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손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④ <u>손님이 은행으로부터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u></p> <p>제 18 조 (책임)</p> <p>① <u>은행은 손님이 은행에 내점하지 아니하고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약정서에 대하여 손님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여기고, 약정서의 위, 변조 등의 사고로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p>② <u>은행은 손님이 FAX 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 없다고 여기고,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고로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p>③ <u>은행은 손님이 E-mail 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신고된 E-mail 주소가 일치하고, ARS 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p>④ <u>손님이 본인 보유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수취계좌는 현지에서 개설된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하며, 은행은 손님이 요청한 수시지급청구서에 따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한 경우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p>⑤ <u>은행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님의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p>제 19 조 (현행과 동일)</p> <p>제 20 조 (관할법원) <u>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손님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제 21 호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 별 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p> <p><부 칙 1>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계좌이체 제한)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1일 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손님에 대한 타인명의 계좌이체 서비스는 2013년 02월 21일부터 금 오백만원 이내로 제한되며(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FAX 로 한정),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합니다.. <부칙 2> <u>이 약관은 2020년 4월 03일 개정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도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u></p> <p>2020.04.03 개정</p>	<p>면책조항 문구 수정 용어변경</p> <p>용어 변경</p> <p>문구 변경</p> <p>용어 변경 문구 변경</p>
--	---	---

	준법감시인심사필 제 2020-약관-제 056 호 (2020.04.03)	
--	--	--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적용